



땅끝 에 남 소식

2021년 9월 17일(제507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채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형지

발행인: 해남군수발행처: 기획실 주소: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광고·고시·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 | |
|-----------------|-------|-----|
| ◎ 해남군 조례 제3036호 | ----- | 2 |
| ◎ 해남군 조례 제3037호 | ----- | 9 |
| ◎ 해남군 조례 제3038호 | ----- | 13 |
| ◎ 해남군 조례 제3039호 | ----- | 15 |
| ◎ 해남군 조례 제3040호 | ----- | 26 |
| ◎ 해남군 조례 제3041호 | ----- | 35 |
| ◎ 해남군 조례 제3042호 | ----- | 41 |
| ◎ 해남군 조례 제3043호 | ----- | 52 |
| ◎ 해남군 조례 제3044호 | ----- | 56 |
| ◎ 해남군 조례 제3045호 | ----- | 64 |
| ◎ 해남군 조례 제3046호 | ----- | 69 |
| ◎ 해남군 조례 제3047호 | ----- | 73 |
| ◎ 해남군 조례 제3048호 | ----- | 75 |
| ◎ 해남군 조례 제3049호 | ----- | 86 |
| ◎ 해남군 조례 제3050호 | ----- | 92 |
| ◎ 해남군 조례 제3051호 | ----- | 99 |
| ◎ 해남군 조례 제3052호 | ----- | 103 |
| ◎ 해남군 조례 제3053호 | ----- | 108 |

| | |
|-----------------------|-----|
| ◎ 해남군 조례 제3054호 ----- | 112 |
| ◎ 해남군 조례 제3055호 ----- | 120 |
| ◎ 해남군 조례 제3056호 ----- | 124 |
| ◎ 해남군 조례 제3057호 ----- | 131 |
| ◎ 해남군 조례 제3058호 ----- | 157 |
| ◎ 해남군 조례 제3059호 ----- | 170 |
| ◎ 해남군 조례 제3060호 ----- | 175 |
| ◎ 해남군 조례 제3061호 ----- | 181 |
| ◎ 해남군 조례 제3062호 ----- | 185 |
| ◎ 해남군 조례 제3063호 ----- | 188 |
| ◎ 해남군 조례 제3064호 ----- | 192 |
| ◎ 해남군 조례 제3065호 ----- | 197 |
| ◎ 해남군 조례 제3066호 ----- | 202 |
| ◎ 해남군 조례 제3067호 ----- | 206 |
| ◎ 해남군 조례 제3068호 ----- | 213 |
| ◎ 해남군 조례 제3069호 ----- | 222 |
| ◎ 해남군 조례 제3070호 ----- | 228 |
| ◎ 해남군 조례 제3071호 ----- | 231 |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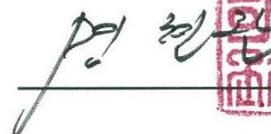
| | |
|-----------------------|-----|
| ◎ 해남군 규칙 제1337호 ----- | 250 |
|-----------------------|-----|

조 레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36호

붙임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전라남도과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중전의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로, “**관계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유인물”을 “인쇄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를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이하 “결정 “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p> <p><u><신 설></u></p>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2. <u>국가 및 전라남도과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u> 3. <u>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u> |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
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지원 및 원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주요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사항
6. 국토 건설 종합 계획 및 도시

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실과소장으로

----관계기관-----
-----.

④ -----

한 차례만 -----.

<삭 제>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
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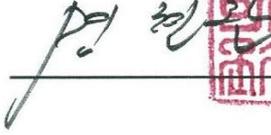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② ----- 관한 -----
-----.

<삭 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37호

붙임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를 “**(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문장·휘장) ① (생략)</p> <p>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p> <p>1. <u>군수</u>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p> <p>2.·3. (생략)</p> <p>③·④ (생략)</p> | <p>제5조(문장·휘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2.·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p>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② (생략)</p> <p>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 하며, <u>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 <p>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사용목적</u>을 위배하거나 <u>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u>----- -----.</p> <p>④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사용료) ① <u>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u></p> | <p>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u></p> <p>1. <u>군에서 후원하는 경우</u></p> <p>2. <u>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u></p> |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 퍼센트 이내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만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38호

붙임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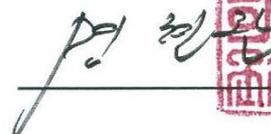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39호

붙임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해남발전”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심의요구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기존 연구 사례와의 중복·유사성
2. 군에서 기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등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4조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4조로 하며, 제7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

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7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 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한다.

제13조 중 “공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공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해남발전”을 “군의 발전”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2항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시점을 밝혀야 한다.

④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용역 종합평가지) ①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평가전문위원과 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발주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연구부정행위 등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과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발주 부서 실·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삭 제</p> <p>4. (생 략)</p> <p>5. “지역 전문가 참여제”라 함은 지역민으로 <u>해남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로 용역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 -- <u>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u>----- -----.</p> <p>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용역 발주 부서는 심의요구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u></p> <p>1. <u>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기존 연구 사례와의 중복·유사성</u></p> <p>2. <u>군에서 기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등</u></p> |
|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u>군수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 <p>제5조(위원회 구성 등) <u><삭 제></u></p>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군정 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신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 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

호선(互選)한다.

③ -----

----- 2명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제8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 업무의 개선·발

제7조의2 (생략)

제8조(간사 등) (생략)

제9조 (생략)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회의의 공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하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생략)

제15조(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 ① 지역 전문가는 해남발전과 지역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용역 수탁자와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 전문가의 참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역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 ~ 제17조의2 (생략)

제18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

전에 관한 사항

제6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9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3조(회의의 공개 등) ----- 공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 ①
----- 군의 발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18조의2 (현행 제16조부터 제17조의2까지와 같음)

제19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을 줄 수 있다.

제19조 (생략)

제20조(용역자료 관리·운영) ①
(생략)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군 홈페이지 및 내부 전산망 등에 공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1조(용역자료 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
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
여야 한다.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
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
개 사유와 공개전환시점을 밝혀야
한다.

④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
결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 종합평가제) ①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평가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평가전문위원과 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발주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연구부정행위 등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신 설>

제2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과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발주 부서 실·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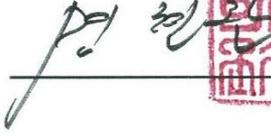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제21조 (생략)

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0호

붙임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법에 관하여”를 “법령 또는”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를 “긴급히 입법하여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법예고함이”를 “입법예고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입안안”을 “입법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법 예고문”을 “입법예고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최하고자 하는”을 “개최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입안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회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에 해당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입법안”을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을”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 결정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등”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 중 “제16조”를 “제15조(입법안 심사)”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 중 “근거자료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을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1조)제3항 중 “시행일로”를 “시행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해남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 제6항”을 “제26조 제6항”으로, “의결을 얻은”을 “의결이 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적용범위) <u>입법에 관하여</u>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4조(적용범위) <u>법령 또는</u> ----- ----- ----- <u>조례에서</u> ----- -----.</p> |
| <p>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p> | <p>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 ----- -----.</p> |
| <p>1. (생 략)</p> | <p>1. (현행과 같음)</p> |
| <p>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 <p>2. ----- ----- <u>긴급히 입법하여야 할 경우</u></p> |
| <p>3. (생 략)</p> | <p>3. (현행과 같음)</p> |
| <p>4. <u>입법예고함이</u>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p> | <p>4. <u>입법예고가</u> ----- ----- -----</p> |
| <p>5. (생 략)</p> | <p>5. (현행과 같음)</p> |
| <p>②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장 등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p> | <p>② ----- ----- ----- -----.</p> |

1. (생략)

2. 그 밖에 입안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

1. (현행과 같음)

2. ----- 입법안-----

제8조(입법예고 방법) ① -----
입법예고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

----- 없으면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제12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최할 -----

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방침결정) ① (생략)

② 담당 부서장 등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 결정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생략)

제17조(입법안 심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 1의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군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4조(방침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을 -----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6조(입법안 심사) -----
----- 제15조-----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8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

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
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
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근
거자료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
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신설>

----- 별지 제1
호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식-----
-----.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 -----
----- 근거
자료,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
-----.

제20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행일-----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입안부서는 조례규
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제22조 (생략)

제23조(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입안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입안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회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에 해당비용추계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삭제>

야 한다.

제24조(전문) ① (생략)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해남군의회 (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회의 의결을 거친 -----
-----.

③ ----- 제26조제6항-----

----- 의결이 된 -----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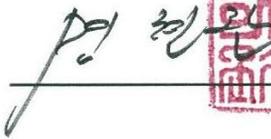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1호

붙임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공포문 1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군의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제2조(「해남군 경관 조례」의 개정)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관광과장,종합민원과장,안전도시과장”을 “관광실장,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제3조(「해남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제4조(「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제5조(「해남군 포상 조례」의 개정)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제6조(「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실장
3. 주민복지과장
4. 안전도시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임원 등) ① ~ ③ (생략)</p> <p>④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군수, <u>군의 관광과장</u>,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p> <p>⑤ (생략)</p> | <p>제7조(임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관광실장</u>-----</p> <p>-----</p> <p>⑤ (현행과 같음)</p> |

제2조(「해남군 경관 조례」의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7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u>으로 한다.</p> <p>④ ~ ⑤ (생략)</p> | <p>제7조(임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③ -----<u>관광실장,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u>,-----</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제3조(「해남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정보화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 <p>제6조(정보화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

| | |
|---|---|
| 1. (생략) 2.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u>관광과장</u> , 종합민원과장, 정보화부서의 장 3. (생략) ④ ~ ⑦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u>관광실장</u>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제4조(「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u>관광과장</u> ,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된다. ⑤ ~ ⑧ (생략)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관광실장</u> -----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5조(「해남군 포상 조례」의 개정)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u>관광과장</u> , 혁신공동체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도시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환경교통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광실장</u> ----- ----- ----- |

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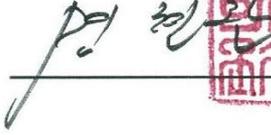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제6조(「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기획홍보실장</u></p> <p>3. <u>주민생활지원과장</u></p> <p>4. <u>안전건설과장</u></p> <p>5. ~ 10. (생략)</p> |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실장</u></p> <p>3. <u>주민복지과장</u></p> <p>4. <u>안전도시과장</u></p> <p>5. ~ 10. (현행과 같음)</p>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2호

붙임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를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행정구역 안의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앞에 “제2장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해수욕장협의회”를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수욕장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시행령 제8조”를 각각 “영 제8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시행령 제13조”를 “영 제13조”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전단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3. 수탁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중전의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제16조(중전의 제18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5. 해남경찰서장

제17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2조 및 제23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송평해수욕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 (제3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송호해수욕장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898-7번지 일원 | |
| 사구미해수욕장 |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51-1번지 일원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해수욕장</u>”이란 <u>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u></p> <p><u><신 설></u></p> <p>2. (생략)</p> <p>3. “<u>시설 사용료</u>”란 <u>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의 <u>해수욕장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u></p> | <p>제1조(목적) -- <u>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 -----</u> -.</p> <p>제2조(정의) ----- -----.</p> <p>1. “<u>공공시설</u>”이란 <u>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u></p> <p>2. “<u>사용료</u>”란 <u>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u><삭 제></u></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u></p> |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 “영” -----

2. 영 제8조 -----

3. ----- 영 제8조 -----

<삭 제>

<삭 제>

다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기간 등) ① (생략)

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3조 (생략)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 · 제16조 (생략)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 · 변경 ·

제7조(개장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13조-----

----- 지체 없-----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2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삭제>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

해제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
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신 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4. (생략)

<신 설>

5. ~ 7. (생략)

③ (생략)

제19조(회의)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

----- 협의회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3. 수탁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5. 해남경찰서장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이
상-----

다.

③ (생 략)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해수욕장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의(開議)-----
-----.

제18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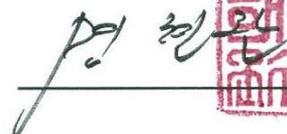
<삭 제>

<삭 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3호

붙임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12조의 제목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단체,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참여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사람”을 “받은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저가 숙박시설”을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 중·저가숙박시설”로, “시설 개선”을 “시설·환경 개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u></p> |
| <p>제12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 <p>제12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 ----- - <u>단체,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 <p>제14조(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서비스</p> | <p>제14조(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 ----- ----- ----- ----- ----- ----- ----- ----- -- <u>받은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u></p> |

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5조(지원 범위) ① 제12조, 제 13조, 제 14조에서 규정한 행·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중·저가 숙박시설 및 음식업 시설 개선 사업비

4. (생략)

② (생략)

하는 사람-----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 범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 중·저가숙박시설 ---
시설·환경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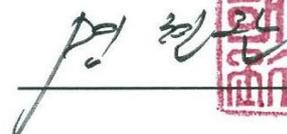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4호

붙임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군””을 “(이하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
을”을 “지정”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대표음식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위원회””를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
언론인·식품관련업계 대표·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관계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5. 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앞에 “제3장 대표음식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추진 등”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표음식점 지정 신청서

| | | | |
|--|----------|-----|--|
| 업소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 음식명칭 | | | |
| 조리방법 설 명 서 | (별지로 작성) | | |
| <p>「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p> | | | |
| <p>구비서류 : 1. 신청서1부. 2. 조리방법설명서 1부. 3. 대표음식점 신청 업소 현황 1부.</p> | | | |

(발 신 기 관 명) 직인

대표음식점 지정 신청서

| | | | |
|-----|--|-----|--|
| 업소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 연락처 | |
| 음식명 | | | |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해남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표음식”이란 <u>해남군(이하 “군”라 한다)</u>을 대표하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p> <p>2. “대표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u>지정</u>을 받은 곳을 말한다.</p> <p>3. ~ 5.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2조(정의) ----- -----.</p> <p>1. -----(<u>이하 “군” 이</u>----- ----- ----- -----.</p> <p>2. ----- ----- ----- 지정 -----.</p> <p>3. ~ 5. (현행과 같음)</p>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대표음식위원회</u></p> <p>제4조(대표음식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u>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제6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보건소장,</p> |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4조(대표음식위원회) ----- ----- ----- <u>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u>----- -----.</p> <p>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련업계 대표·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 설>

제3장 대표음식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추진 등

제21조(상표의 사용금지) 대표음식 또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생 략)

--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관계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5. 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삭 제>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 ①

제22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음식의 제조방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보칙

제24조 · 제25조 (생략)

제22조(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 ①

제21조-----

-----.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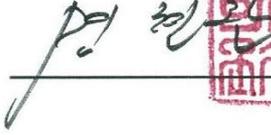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삭 제>

제23조 · 제24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5호

붙임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해남군”을 “해남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남군”을 “군”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군에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남군”을 “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지원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필요한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행복장려금” 이란 다문화가족이 해남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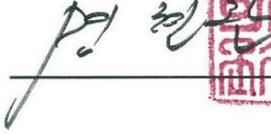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6호

붙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1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자금, 교복비 등**”을 “**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공공시설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다가정**”을 “**다자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사항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②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③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면제대상의 내용란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④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3. 라목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사목 중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가구”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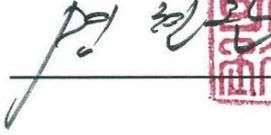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양육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u>학자금, 교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u></p> <p>② 군수는 <u>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제8조(학자금)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p> <p>1. (생략)</p> <p>2. <u>다가정 가정의 만 39세 미만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u></p> <p>②·③ (생략)</p> | <p>제4조(지원) ① ----- ----- ----- ----- <u>학자금</u> ----- -----.</p> <p>② ----- <u>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공공시설물</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학자금)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자녀</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u></p>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7호

붙임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조례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는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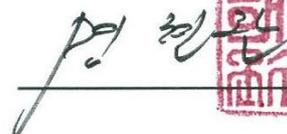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8호

붙임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귀농어업인”을 “귀농어·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어업인의 책무)”를 “(귀농어·귀촌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어·귀촌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귀농어·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어업인의”를 “귀농어·귀촌인의”로,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을 “귀농어·귀촌인 육성·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귀농어업인의 유치·홍보·교육”을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귀농어업인 유치”를 “귀농어·귀촌인 유치”로,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로, “설치·운영하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같음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귀농어업인의”를 “귀농어·귀촌인의”로, “귀농어업인 유치”를 “귀농어·귀촌인 유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귀농어·귀촌인의 자격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제7조제2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인구정책과장,”으로, “인구정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귀농어업인 지원)”을 “(귀농어·귀촌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업인들”을 “귀농어·귀촌인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귀어”를 “귀농어·귀촌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귀농어·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인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설치·운영)”을 “(귀농어·귀촌인 상담장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구정책과와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을 “인구정책과, 읍·면사무소에 귀농어·귀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기능)”을 “(귀농어·귀촌인 상담장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귀농·귀어”를 “귀농어·귀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귀농어업”을 “귀농어·귀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귀농어업인들”을 “귀농어·귀촌인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어·귀촌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 중 “귀농어업인”을 각각 “귀농어·귀촌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u>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어업</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의 <u>농업</u>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1호 가목의 <u>어업</u>을 말한다. 2. “<u>농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u>농촌</u>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u>어촌</u>을 말한다. 3. “<u>귀농어업인</u>”이란 <u>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u>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귀농어·귀촌인-----</u>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어업</u>”이란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u>농업</u>과 <u>어업</u>을 말한다. 2. “<u>농어촌</u>”이란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u>을 말한다 3. “<u>귀농어업인</u>”이란 <u>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u>을 말한다. |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란 1년 이상 타 시군에서 농어업 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세대주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귀농어업인으로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어업인의 책무) ① (생략)

② 귀농어업인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어·귀촌인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귀농어·귀촌인-----

-----.

제4조(귀농어·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귀농어·귀촌인의 ----- 귀

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의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③ (생략)

제5조(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설치)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같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업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어업인의 자격심의

농어·귀촌인 육성·지원계획-
-----.

② -----
-----.

1.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 -----
2. 귀농어·귀촌-----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설치) 귀농어·귀촌인 유치

----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 귀농어·귀촌-----

2. 귀농어·귀촌인의 -----
-- 귀농어·귀촌인 유치 ----
-
3. 귀농어·귀촌인의 자격심의

4.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④ (생략)

제11조(귀농어업인 신고 및 확인)

① (생략)

② 신고인은 제2조제4호의 귀농어업인 중 세대주가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였을 경우 귀농어업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귀농어업인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이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귀농어·귀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귀농어업인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제3호-----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어·귀촌인 지원) ① --- 귀농어·귀촌인들-----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어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빈집 정보제공
3. ~ 6. (생략)
7.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축사 등 정보제공

<신설>

8. (생략)

②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구정책과와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인 상담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귀농어업인 상담 장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

1. 귀농어·귀촌인 -----

2. 귀농어·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3.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지원대상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인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귀농어·귀촌인 상담장소의 설치·운영) ① -----
----- 인구정책과, 읍·면사무소에 귀농어·귀촌-
-----.

② 귀농어·귀촌-----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4조(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기능) 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어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어업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어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5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을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남군으로 귀농 예정자 및 귀농자 중 입주 우선순위를

제14조(귀농어·귀촌인 상담장소의 기능) 귀농어·귀촌-----
-----.

1. 귀농어·귀촌-----

2. 귀농어·귀촌-----

3. ----- 귀농어·귀촌인들-----

제15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 귀농어·귀촌인-----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귀농인의 집 운영) -----

-----.

1. -----
----- 우선순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 4. (생략)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귀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농가주택 수리비 등 보상금과 재료비 성격의 지원은 제외한다.

1. 귀농어업인이 보조나 용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사용한 때

2. ~ 4. (생략)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

- 귀농어·귀촌인-----

-----.

-----.

1. 귀농어·귀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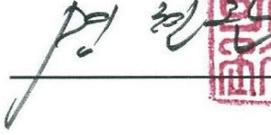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2. ~ 4. (현행과 같음)

5. ----- 귀농어·귀촌인-----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49호

붙임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기타 수입”을 “그 밖에 수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일”을 “날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불금을”을 “대지급금을”로,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은 띄어쓰기 맞춤법 규정에 맞게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p> |
| <p>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 <p>제2조(세입과 세출) ----- ----- ----- 그 밖에 수입----- ----- ----- -.</p> |
|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으로 한다.</p> <p>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p> |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운용관----- ----- ----- -----.</p> <p>② ----- -- 제1항에 따른 ----- ----- -----</p> |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①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날짜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

 ----- 대지급금을 -----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불금 상환
독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상
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0호

붙임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를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남군”을 “조례는 해남군”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보장구”란”을 ““장애인보조기기”란”으로, “보장구 중”을 “보조기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휠체어 등을 수리한”을 “수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보장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

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u>해남군</u>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u>장애인보장구</u>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장애인보장구</u>”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u>보장구</u>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u>장애인보장구</u>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p>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u>해남군수</u> (이하 “<u>군수</u>” 라 한다)는 <u>장애인</u></p>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해남군</u>----- ----- ----- <u>장애인보조</u> <u>기기</u>-----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장애인보조기기</u>”란 ----- ----- <u>보조기기</u> 중 ----- -----. 3. ----- <u>장</u> <u>애인보조기기</u> ----- -----. <p>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 ----- <u>장애인보조기기</u></p> |

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 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 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리비용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보조기기 -----
----- 수리한

② -----

1.-----

----- 넘는 -----

2. -----

애인은 연간 10만원이내에서 1회 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③·④ (생략)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자에 의한 보장구의 파손·고장인 경우
- 2.·3. (생략)

제7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1. 장애인보장구 수리의 필요성 적정 여부
2. 제3자에 의한 보장구의 파손·고장 여부
3.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통보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

----- 10만원 이내-----

----- 넘는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제외) -----

-----.

1. ----- 보조기기-----

- 2.·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

② -----

-----.

1. 장애인보조기기 -----

2. ----- 보조기기-----

3.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4호서식-----

알리고-----

에게 즉시 알린다.

④ · ⑤ (생략)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거짓으-----

② -----

----- 날-----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1호

붙임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② (생략)</p> <p>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p> <p>5.·6. (생략)</p> <p>④·⑤ (생략)</p> <p>제10조(복지위원) 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위원으로 위촉한다.</p> <p>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p> <p>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p> | <p>제9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6.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발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2호

붙임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상 80세”를 “주민등록상 만80세”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사람과 장수 수당을 받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인외”를 “본인 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해 남 군 수”를 “해 남 군”으로 하고, 같은 앞면 중 “해남군수”를 “해남군”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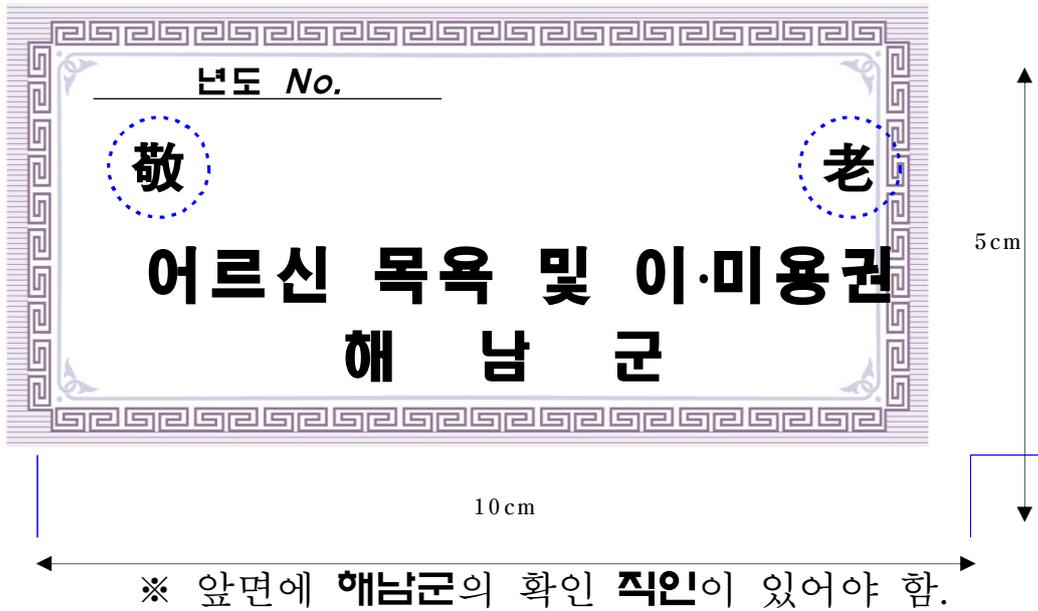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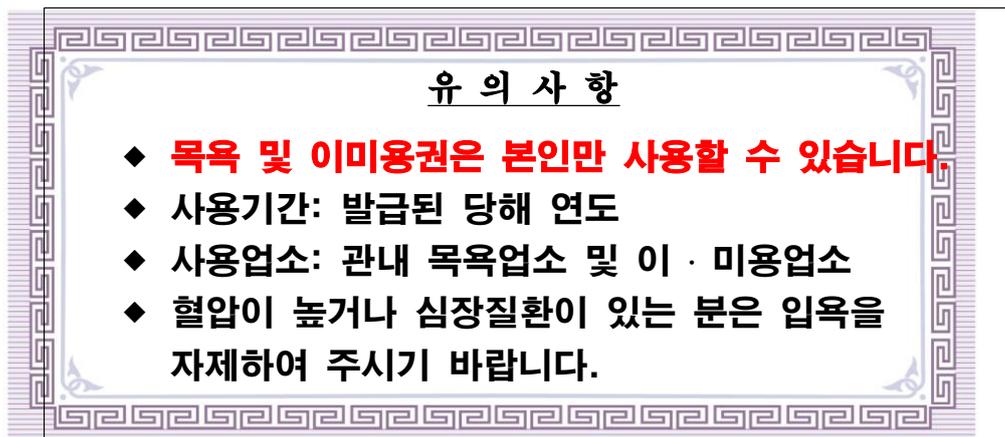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 및 이·미용권

<앞면>



<뒷면>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령자 중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u>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u>사람과 장수 수당을 받는 사람</u>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p> <p>① (생 략)</p> <p>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u>본인</u>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p> | <p>제2조(지원대상) ① ----- ----- ----- ----- ----- <u>주민등록상 만80세</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내용 등)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사람</u>----- -----.</p> <p>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본인</u> ----- <u>외</u>-----.</p> <p>제8조(환수처리 등) -----</p>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략)

-- 그 밖-----

-.

1.·2. (현행과 같음)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3호

붙임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해남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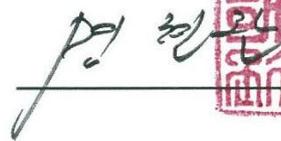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4호

붙임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친화도시”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친화요건을 두루 갖춘 도시를 말한다.

1. 공공시설 등 아동 접근·이용 편리도시
2. 문화적·정서적 아동공동체 도시
3. 체계적·제도적 아동 배려도시
4. 그 밖에 아동의 건설적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될 수 있는 도시

제3조(적용범위)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및 그 밖의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구성계획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체계적 구성을 위하여 해

마다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조성사업의 추진
3. 관련기관·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위원회의 제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 보호자, 그 밖의 군민,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성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항의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1. 모두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은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조성사업의 추진범위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도시 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 이 경우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보행편의 및 안전성

나.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다.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라.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마. 놀이시설의 확충

2.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가. 환경안전망 구축

나. 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

3. 건강증진

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 조장

나. 성별 특성 고려

4. 교육·여가·문화생활

가. 능력발휘와 충분한 휴식 및 놀이마당 제공

나. 관련 시설의 확충

5. 참여보장

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나. 가목에 따른 의견의 정책반영 노력

6. 권리홍보 및 교육

가. 모든 시민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필요한 홍보

나. 홍보물 제작과 주민에게 배포

다.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제공 노력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모든 군민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필요한 홍보

②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아동참여위원회)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해당 권리 및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관련 행사의 참여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협의 등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아동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

2. 아동위원은 군수가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아동으로 본다.

3.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아동위원은 19세가 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③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아동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아동위원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아동위원 1명마다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원활한 운영·활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5. 군수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가. 배지 및 단체복 등 지급
 - 나. 견학활동 및 워크숍 기회제공
 - 다. 우수 아동위원의 지원
 -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 ⑤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결정·집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자문한다.

1.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3. 조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방안
4.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5. 그 밖에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군수는 그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보호자 대표
2. 해남경찰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제10조(표창)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아동, 아동위원, 보호자, 그 밖의 군민,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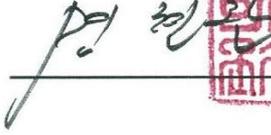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5호

붙임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개설한 도로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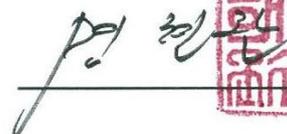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u></p> <p><u><신 설></u></p> | <p>제21조(도로의 지정) ----- ----- ----- ----- ----- ----- ----- ----- -----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개설한 도로</u></p> <p>제21조의4(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u></p> <p>2.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건축물</p> <p>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p> |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
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
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여
야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6호

붙임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해남군에서 일 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

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해남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남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종합터미널, 여객터미널, 광장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해남군주소정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그 외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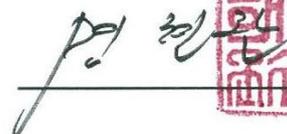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해남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해남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7호

붙임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 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기획실장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부서장. 다만,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해남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통제관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해당 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 업무와 역할 |
|----------------|-------------------------------|---|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 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
| | 3) 상황관리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

| | | |
|----------------------|--------------------------------|---|
| | <p>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p> | <p>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각종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p> |
| <p>나. 협업기능 반</p> | <p>4) 행정지원팀</p> | <p>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p> |
| | <p>1) 긴급생활 안정 지원 반</p> |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아) 각 부서 긴급생활안정지원 정책 확인 및 시행</p> |
| | <p>2) 재난현장 환경 정비 반</p> |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p> |
| | <p>3) 긴급통신</p> | <p>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p> |

| | | |
|---------------------------|-----|--|
| | 지원반 |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
|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 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 6) 재난수습 홍보반 |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 7) 재난관리 자원 지 원반 |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
| 8) 교통대책반 |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 | | |
|----------------------|-------------------|--|
| | | <p>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p> <p>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p> <p>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p> <p>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p> <p>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
| |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p>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p> <p>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p>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
|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p>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p> <p>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p> |
| | 11) 사회질서 유지반 |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
| | 12) 수색, 구조·구급반 |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p> <p>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p>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 업무와 역할 |
|----------------|-----------------------|---|
| 가. 재난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 | 3) 행정지원팀 |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
| | 3) 긴급통신지원반 | |
|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 | 6) 재난수습홍보반 | |
|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 | 8) 교통대책반 | |

| | | |
|----------------------|--------------------------------|--|
| |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
|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 | 11) 사회질서 유지반 | |
| | 12) 수색, 구조·구급반 | |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 |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

- 비고 1. 재난상황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
| 1.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총무과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
| 3.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안전도시과 |
| 4. 법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총무과 |
| 5.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도시과 |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재무과 안전도시과 해양수산과 안전도시과 |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축산사업소 건설과 |
| 9. 산업통상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보건소 |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

| | | |
|--|---|---|
| |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
| 12.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건설과 |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상하수도 환경교통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
| 14.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 15.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재무과 |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
| 17. 소방청 |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해당실과 건설과 |
| 18. 문화재청 |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예술과 |
| 19.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
| 20. 해양경찰청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수산과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 |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 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 당 관 | 통 제 관 | 총괄 조정 관 | 차 장 | 본 부 장 |
|----------|-----------------|-----------------------|-------------|-------------|---------------|--------|-------------|
| 1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
| |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
| 2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
| |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 ○ |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
| |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 ○ | | | |
| | | 그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 3 | 대책본부 운영상황 |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
| |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
| 4 | 피해조사 및 복구 |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 5 | 대책본부 회의 | 회의 소집 | | ○ |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
| 6 |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 | | ○ | |
| |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 |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요청 | | | | | ○ |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단계 |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
| 본 부 장 | | 군수 | | |
| 차 장 | | 부군수 | | |
| 총괄조정관 | | 기획실장 | | |
| 통 제 관 | | 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 |
| 담 당 관 |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 | |
| 인 원 | | 6+a명 | 13+a+β명 | 18+a+β명 |
| 반 장 |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급 1명 | 과장급 1명 | 과장급 1명 |
| 실 무 반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 | 나) 상 황 보 고 서 작 성 팀 | -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
| | 다) 상 황 관 리 총 괄 및 상 황 분 석 평 가 팀 | -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
| | 라) 행 정 지 원 팀 | - | (1명) · 총무과 직원 1명 | (1명) · 총무과 직원 1명 |
| | 2) 협 업 기 능 반(a)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교통과, 해양수산과) | | |

| | |
|----------------------------------|---|
| | 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도시과) 아) 교통대책반(환경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 타) 수색, 구조·구급반(안전도시과/소방서협조) |
|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 원반 (β) |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 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 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비고 제6호 관련)

| 구분 | | 비상단계 기준 |
|------------------|-----------|---|
| 1. 풍수해(태풍·호우·대설) | 가. 비상1 단계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 | 나. 비상2 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 | 다. 비상3 단계 | 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가. 비상1 단계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 | 나. 비상2 단계 |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

| | | |
|-------|-----------|--|
| | 단계 | <p>지진이 발생한 경우</p> <p>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p> <p>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p> <p>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p> |
| | 다. 비상3 단계 | <p>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p> |
| 3. 가뭄 | 가. 비상1 단계 |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p> |
| | 나. 비상2 단계 |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p> <p>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
| | 다. 비상3 단계 | <p>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

| | | |
|-------|-----------|---|
| 4. 폭염 | 가. 비상1 단계 |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나. 비상2 단계 |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다. 비상3 단계 |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5. 한파 | 가. 비상1 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나. 비상2 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다. 비상3 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전남도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 | | | |
|-------|-----------------------|-----------------------------|--|--|
| 본 부 장 | 군수 | | | |
| 차 장 | 부군수 | | | |
| 총괄조정관 | 기획실장 | | | |
| 통 제 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 | |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 | | | |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 |
| | 반 장 | 과장급 1명 | | |
|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총 괄팀 (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
| | | 나) 수습상황과 악팀 (6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
| | | 다) 행정지원팀 | · 총무과 직원 1명 | |
| | 2)협업기능 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주민복지과 | |
| |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환경교통과, 해양수산과 | |
| |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 총무과 | |
| |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건설과 | |
| | |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경제산업과 | |
| | 바) 재난수습 | · 기획실 | | |

| | | |
|--|----------------------------|---|
| | 홍보반 | |
| |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 안전도시과 |
| | 아) 교통대책반 | · 환경교통과 |
| |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 보건소 |
|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주민복지과 |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 총무과/경찰서 협조 |
| |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 안전도시과/소방서 협조 |
| |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 기관 지원반(β) |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 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 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 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현장지원반(γ) | ·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8호

붙임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법 제3조제6호의 긴급구조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남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2.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의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통보)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시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

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에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 지역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의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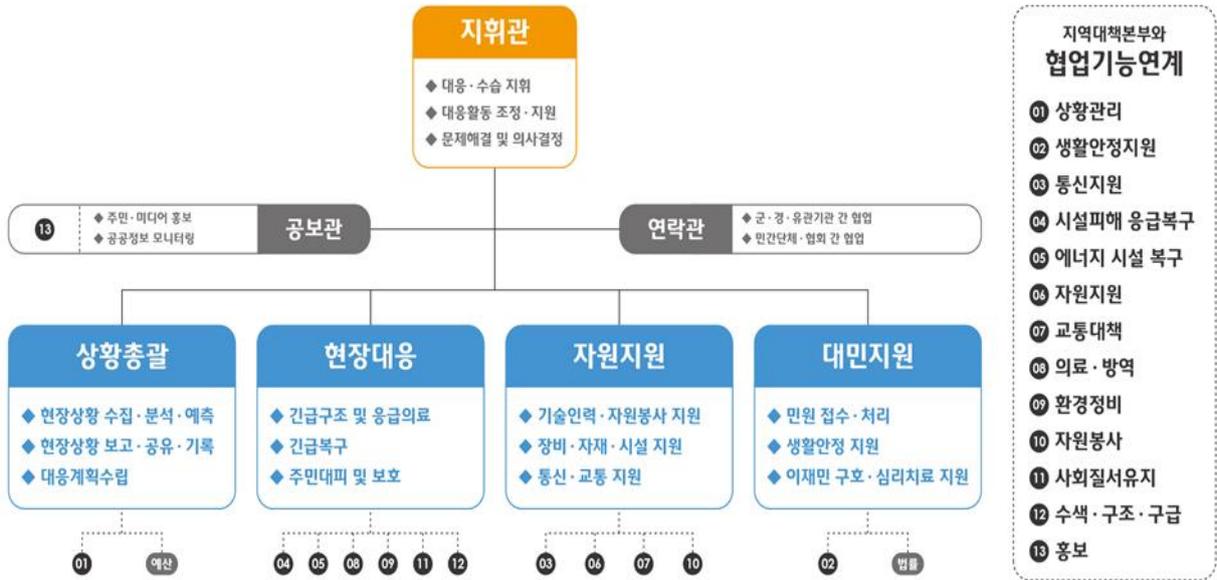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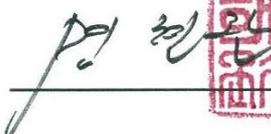
[별표 2]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제7조 관련)

| 구 분 | 주 요 임 무 |
|--------------------------|---|
| 통합지원본부장 (부 군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 공 보 관 (기 획 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 연 락 관 (해 당 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軍)·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
| 상 황 총 괄 반 (안 전 도 시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 현 장 대 응 반 (해 당 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
| 자 원 지 원 반 (해 당 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 대 민 지 원 반 (해 당 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59호

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4명”을 “8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29명”을 “84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44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29명</u></p> <p>2. (생략)</p> | <p>제2조(정원의 총수)-----</p> <p>-----<u>859명</u></p> <p>---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44명</u></p> <p>2. (현행과 같음)</p> |

< 별지 >

[별표 3] <현 행>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총 계 | 844 |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군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801 | | | | | |
| 4급 | 2 | 1 | | 1 | | |
| 4~5급 | 3 | 2 | | | | 1 |
| 5급 | 37 | 15 | 3 | 2 | 4 | 13 |
| 6급 이하 소계 | 758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 | |
| 별정직 계 | 0 | | | | | |
| 6급상당 | 0 | | | | | |
| 연구직 계 | 9 | | |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9 | | | | | |
| 지도직 계 | 33 | | | |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0 | | | | | |

[별표 3]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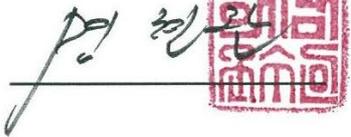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 | | | | | | |
| 총 계 | | 859 | | | | | |
| 정무직 계 | | 1 | | | | | |
| 군수 | | 1 | 1 | | | | |
| 일반직 계 | | 816 | | | | | |
| 4급 | | 2 | 1 | | 1 | | |
| 4~5급 | | 3 | 2 | | | | 1 |
| 5급 | | 37 | 15 | 3 | 2 | 4 | 13 |
| 6급 이하 소계 | | 773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 1 | | | | | |
| 별정직 계 | | 0 | | | | | |
| 6급상당 | | 0 | | | | | |
| 연구직 계 | | 9 | | | | | |
| 연구관 | | | | | | | |
| 연구사 | | 9 | | | | | |
| 지도직 계 | | 33 | | | | | |
| 지도관 | | 3 | | | 3 | | |
| 지도사 | | 30 | | | | |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0호

붙임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하는**”을 “**수여하는**”으로,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뚜렷한 자**”를 “**현저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종**”을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술예술, 체육, 기타**”를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로, “**자**”를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중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를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회무**”를 “**회의와 관련된 사무**”로 하고, 제2항 중 “**사고가 있을때는**”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u>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수 <u>여하는 ----- 정하는 것-----.</u> |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u>경우</u> 에 수여한다. | 제5조(표창장)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1. <u>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 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u> | 1. ----- ----- <u>현저한 경우</u> |
| 2. <u>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 월한 자</u> | 2. ----- ----- <u>경우</u> |
| 3. <u>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진작에 솔선수범한 자</u> | 3. <u>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 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u> |
|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u>각호의 경 우에 수여한다.</u> | 제7조(상장) ----- <u>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u> --. |
| 1. <u>각종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자</u> | 1. <u>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 ----- 경우</u> |
| 2. <u>학술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u> | 2. <u>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 ----- 경우</u> |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 과 같음) |
| ② <u>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u> | ② <u>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 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 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u> |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 회의와 관련된 사무 -----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 제17조 (생략)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1호

붙임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사항

-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2호

붙임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를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다음년도 2월말”을 “당해 연도 9월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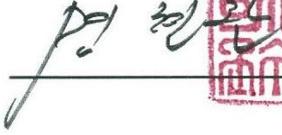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u>다음년도 2월말</u>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 략)</p> | <p>제13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당해 연도 9월말-----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3호

붙임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역 내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추천 등) ①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군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사항

제9조(표창) 군민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군민, 거리공연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4호

붙임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을 “외식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4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를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u>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u></p> <p>제3조(지정) ① <u>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u>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가격·품질·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u></p> <p>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u>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하여야</u></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u>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u></p> <p>제3조(지정) ① <u>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외식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u> ----- -----.</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u></p> <p>③ ----- <u>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u> ----- -----.</p> <p>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u>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u></p> |

한다.

<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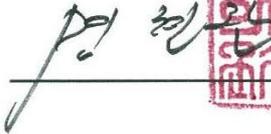
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
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
한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5호

붙임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실시공을 사전에”를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로,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과 주민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군”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2조”를 “제3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읍면장”을 각각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를“(읍장·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를 “비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u>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과 주민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 <u>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 필요한 -----</u> ----- ----- -----.</p> |
| <p>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p> | <p>제3조(적용) ----- <u>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u>----- ----- 「<u>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u>」 제55조제1항----- ----- -----.</p> |
| <p>제3조 (생략)</p> | <p>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p> |
| <p>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p> <p>① <u>군수는</u>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u>제2조에</u> 따른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u>읍면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통고를 받은 <u>읍면장</u>은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p> <p>① <u>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u>제3조</u>----- ----- ----- <u>읍장·면장</u>----- -----.</p> <p>② ----- <u>읍장·면장</u>----- ----- -----.</p> |
| <p>제5조(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p> | <p>제5조(읍장·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p> |

① 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
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수
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
지 서식의 현장 지시사항 처리부
를 비치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
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공사 중 시행중인 공
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당 실과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공확인) ① 공사감독공무원
은 제5조제3항에 의한 통고를 받
은 즉시 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
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
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
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
록 보존하여야 한다.

무) ① 읍장·면장-----

-----.

② -----

----- 비
치하고 -----
-----.

③ 읍장·면장-----

-----.

제6조(시공확인) ① -----
----- 따라 -----
읍장·면장-----
-----.

② ----- 읍장·면장

-----.

제7조(준공계 제출) 시공자가 준공
계를 제출하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준공계 제출) -----
----- 읍장·면장-----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6호

붙임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 변동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촌개발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를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정비법시행령</u>」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구역의 관리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농어촌정비법시행령</u>」 제24조----- ----- <u>필요한</u> ----- -----.</p> |
| <p>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u>군수</u>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 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③ (생략)</p> | <p>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u>해남군수</u>(이하 “군수” 라 한다)-----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u></p> | <p>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 ----- ----- -----.</p> |
| <p>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② (생략)</p> <p>③ <u>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u></p> | <p>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하수법시행령</u>」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u>지하수의 수위변동과</u> ----- -----</p> |

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생략)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 다. (생략)

라.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마. (생략)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4. (생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세칙)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한국농어촌공사 -----

마. (현행과 같음)

3. -----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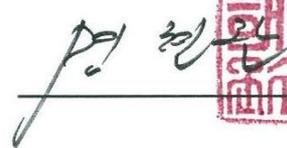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16조(운영세칙) ----- 필요한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7호

붙임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군내”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해남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과장, 안전도시과장, 재무과장, 환경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보칙 등”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를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u>군내</u>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p> <p>2. “자발적 협약”이란 <u>군수</u>,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u>것을 제외하고</u>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p> <p>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u>군 본청</u></p> |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2조(정의) ----- -----.</p> <p>1.----- - <u>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u>-----.</p> <p>2.----- <u>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p> <p>제3조(적용범위) ----- ----- ----- ----- <u>것 외에</u>----- -----.</p>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p> <p>1. 「<u>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u>」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p> |

2.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4조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제2장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해남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종합민원과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해남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삭 제>

제5조(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협의회 기능 및 구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 재무과장, 환경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제4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5장 보칙 등

제21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생산
·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
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
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1조(포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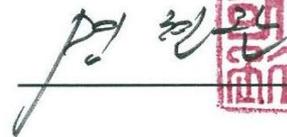
-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8호

붙임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제5조제1항 관련)

전 경 사 진

| | | | | | | | | | | | | |
|------------------|-------------------------|--------------------------------|-------------|------|--------------------|-------------|-------------------|--------------|-------------|-----|----|--|
| 소 재 지 | | 화장실 명칭 | | | | | | | | | | |
| 지 역 구 분 | | 설치 | | | 관리책 | | | 소 속 | | | | |
| 설 치 및 관 리 주 체 | 설치주체 | 년도 | | | 임공 | | | 직 급 | | | | |
| | 관리주체 | | | | 무 원 | | | 성 명 | | | | |
| 관 리 인 | | (전화번호 :) | | | | | 월평균 이용인원 | | | | | |
| 규 모 | 부지 (m ²) | 화장실 면적 (m ²)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사용료 | | |
| | | | 남 | 여 | 장애인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유료 | 무료 | |
| 편의시설 내역 | 세 면 설 | 난방 시설 | 냉방 시설 | 환풍 기 | 화장지 (자동 판매기) | 비누 | 수 건 (에어 타올) | 탈취제 (방향제) | 청소도구함 | | 기타 | |
| | | | | | | | | | 내부 | 외부 | | |
| 시설관리 내역 | 년월일 | 관 리 사 항 | 금 액 (천원) | 년월일 | 관 리 사 항 | 금 액 (천원) | 년월일 | 관 리 사 항 | 금 액 (천원)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
|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설치·운영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처리기간 | | | | | | | | |
| | | 3일 | | | | | | | | |
| 신청인 | 상 호(명칭)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남, 여) | 생년월일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시설현황 | 소 재 지 | | | 관리주체 | | | | | | |
| | 관 리 인 | (남, 여)(전화번호:) | | 설치년도 | | | | | | |
| | 규 모 | 부 지: m ² , 화장실 면적: m ² | | | | | | | | |
| 시설내역 | 시 설 내 역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 |
| | | 남자용 | 여자용 | 장애인용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 서양식 | |
| | | | | | | | | | | |
| | 편 의 시 설 | 세면기 |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 | 환풍기 | 화장지 | | 비누 | | 방향제 |
| | | | | 유 | | 무 | 유 | 무 | 유 | 무 |
| | | | | | | | | | | |
| 1회 사용료 | | 원 | | | | | | | | |
|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해남군수 귀하 | | | | | | | | | | |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 | | | | | | | | 수수료 없 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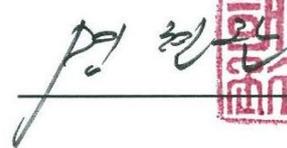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제 호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제9조제3항 관련) | | | | | | | | |
| 대표자 | 상 호(명칭) | | | | | | | |
| | 성 명 | | | | | | | |
| | 주 소 | | | | | | | |
| 관 리 인 | | (전화번호 :) | | | | | | |
| 시설내역 | 시설내역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 | | 남자용 | 여자용 | 장애인용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 | | | | | | | | |
| | 편의시설 | 세면시설 | | 손 건조기 (종이수건) | | 환 풍 기 | | |
| | | 대 | | 대 | | 대 | | |
| 1회 사용료 | | 원 | | | | | | |
|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div> | | | | | | | |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8. 23.)에서 의결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69호

붙임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를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보건의료관련 기관, 전문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장의 임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1회, 임시회의”를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 “때 수시”를 “때에”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를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u></p> | <p><u>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u></p>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건강증진법</u>」 제10조에 따라 <u>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 <p>제2조(기능) <u>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u> 2. · 3. (생략) 4. <u>그 밖에 군수가 주민 건강증진</u> | <p>제2조(기능) <u>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u> ----- <u>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수립 · 시행</u>----- 2. · 3. (현행과 같음) 4. ----- <u>해남군수(이하 “군수”</u> |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

라 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 호선(互選)한다.

③ ----- 보건의료 관련기관, 전문가 및 -----.

④ ----- 기획실장-----.

제5조(위원의 해촉) ----- 그 밖에-----.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생략)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또----- 때에 -----
-.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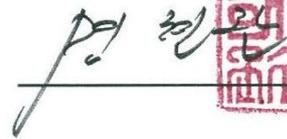
제8조(간사) -----
-----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삭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70호

붙임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8.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071호

붙임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반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

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하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

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군 하수

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1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0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

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21. 4. 15.>

④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내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1년/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요금의 100분의 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요금의 100분의 50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최저 단가 적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20.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5. 만 18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건에 5천원을 넘을 수 없다.

1.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하는 경우
 2.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
-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할인 대상 및 절차는 「해남군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 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5조제1항)

| | | | | | | |
|---|--|--------------------------------------|---|-------------------------------|--------------|-----|
| 설치자 | 법인명 | |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시공자 | 법인명 | |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배수설비현황 | 설치목적 |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 | | | |
| | 설치위치 | 군 읍·면 번지(통 반) | | | | |
| | 관종 |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 | | | |
| | 관경 | ø mm | 연장 m |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 | |
| | 배출수량 | m ³ /일 |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 | |
| 준공검사 | 검사항목 | | 1차 검사 | 보완사항 | 2차 검사 | 비고 |
| | | |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 | | | | |
| |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 | | | | |
| | 3. 배수설비 환경의 적정성 | | | | | |
| |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 | | | |
| | 5. 하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 | | | | |
| |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 | | | | |
| | 7. 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 | | | | |
| | 검사자 | | 성명(서명 또는 인) | | 성명(서명 또는 인) | |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 | | | | |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해 남 군 수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 | | | | | 수수료 |
|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 | | | | | |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2]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제7조제5항)

| 존 치 기 간 | 감 면 비 율 (%) |
|----------------|-------------|
| 1년 미만 | 면 제 |
| 1년 이상 ~ 3년 미만 | 8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6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40 |
| 15년 미만 | 20 |

주1) 감면비율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주2)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해남군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구분 업종 | 사 용 요 율 | | | |
|----------|-----------------------------|-------------------------|-----------|--------------|
| | 사용구분 (m ³ /월) | m ³ 당 단가 (원) | | |
| | | 분류식 지역 | 합류식 지역 | 하수관로 사용지역 |
| 가 정 용 | 1 ~ 20 | 160 | 160 | |
| | 21 ~ 30 | 240 | 240 | |
| | 31이상 | 460 | 460 | |
| 일 반 용 | 1 ~ 50 | 210 | 210 | |
| | 51 ~ 100 | 260 | 260 | |
| | 101 ~ 200 | 340 | 340 | |
| | 201 ~ 300 | 440 | 440 | |
| | 301이상 | 540 | 540 | |
| 대중탕용 | 1 ~ 200 | 190 | 190 | |
| | 201 - 500 | 240 | 240 | |
| | 501이상 | 320 | 320 | |
| 산 업 용 | 1 ~ 50 | 120 | 120 | |
| | 51 ~ 100 | 140 | 140 | |
| | 101 ~ 200 | 190 | 190 | |
| | 201 ~ 300 | 240 | 240 | |
| | 301이상 | 300 | 300 |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2. m³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하수·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같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 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 + (총인 또는 총질소) + 부유물질량

[별표 5]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365일 기준)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 계산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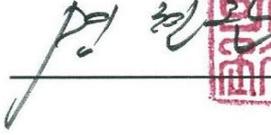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규 칙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1. 8. 4.)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37호

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현 행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 기 관 별 | | 합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직급별 | 직렬별 | | | | | | |
| 총 계 | | 844 | 373 | 15 | 129 | 51 | 276 |
| 정무직계 | | 1 | 1 | | | | |
| 일반직계 | | 801 | 365 | 15 | 96 | 49 | 276 |
| 4 급 | 4급 소계 | 2 | 1 | | 1 | | |
| | 서기관 | 1 | 1 | | | | |
| | 기술서기관 | 1 | | | 1 | | |
| 4~5급 | 4 ~ 5급 소계 | 3 | 2 | | | | 1 |
| | 서기관.행정 | 1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시설 | 1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1 | | | | | 1 |
| 5 급 | 5급 소계 | 37 | 15 | 3 | 2 | 4 | 13 |
| | 행정 | 3 | 2 | 1 | | | |
| | 시설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 | 1 | 1 | | | | |
| | 행정.농업 | 3 | 2 | | | 1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행정.시설 | 7 | 5 | | | 2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1 | 1 | | | |
| | 행정.농업.녹지 | 1 | 1 | | | | |
| | 행정.농업.시설 | 1 | | | | 1 | |
| | 행정.환경.시설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4 | | | | | 4 |
|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 2 | | | | | 2 |
| | 행정.공업.농업.보건 | 1 | | | | | 1 |
| | 행정.공업.녹지.간호 | 1 | | | | | 1 |
|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 1 | | | | | 1 |
| |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 1 | | | | | 1 |
|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 1 | | 1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 행정.보건.환경.시설 | 1 | | | | | 1 | |

| | | | | | | | |
|------------|-----------------|-----|-----|---|----|----|----|
|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6 급 | 6급 소계 | 195 | 101 | 2 | 21 | 12 | 59 |
| | 행정 | 21 | 19 | | | | 2 |
| | 세무 | 2 | 2 | | | | |
| | 사회복지 | 2 | 2 | | | | |
| | 농업 | 2 | 2 | | |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보건진료 | 10 | | | 10 | | |
| | 시설 | 4 | 4 | | | | |
| | 운전 | 3 | 3 | | | | |
| | 행정.세무 | 7 | 6 | | | | 1 |
| | 행정.사회복지 | 19 | 4 | | | | 15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행정.공업 | 2 | 1 | | | 1 | |
| | 행정.농업 | 8 | 7 | | 1 | 0 | |
| | 행정.녹지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 | 2 | 2 | | | | |
| | 행정.보건 | 1 | | | 1 | | |
| | 행정.시설 | 13 | 12 | 0 | | 1 | |
| | 농업.수의 | 1 | | | | 1 | |
| | 보건.간호 | 1 | 1 | | | | |
| | 행정.세무.사회복지 | 4 | 2 | | | | 2 |
| | 행정.세무.농업 | 14 | 1 | | | | 13 |
| | 행정.세무.시설 | 2 | 2 | | | | |
| | 행정.전산.농업 | 1 | | | | | 1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사서 | 3 | 1 | 1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1 | | | | | 1 |
| 행정.사회복지.보건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2 | 1 | | | 1 | | |
| 행정.사서.사무운영 | 2 | | | | 1 | 1 | |
| 행정.공업.농업 | 1 | | | | | 1 | |
| 행정.공업.녹지 | 1 | | | | | 1 | |
| 행정.공업.환경 | 2 | 2 | | | | | |
| 행정.공업.시설 | 2 | 1 | | | 1 | | |
| 행정.농업.전산 | 1 | 1 | | | | | |
| 행정.농업.녹지 | 6 | 3 | | | | 3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2 | 1 | | | | 1 | |
| 6급 | | | | | | | |

| | | | | | | | |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 1 |
| | 행정.농업.시설 | 3 | 3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3 | 1 | | 2 | | |
| | 행정.보건.간호 | 1 | | | 1 | | |
| | 전산.공업.방송통신 | 2 | 2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6 | | | 6 | | |
| |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 0 | | 0 | | | |
| | 행정.세무.공업.시설 | 2 | 1 | 1 | | | |
| | 행정.전산.공업.시설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2 | | | | | 2 |
| | 행정.공업.농업.환경 | 1 | | | | 1 | |
| | 행정.공업.녹지.시설 | 4 | 2 | | | | 2 |
| | 행정.공업.환경.시설 | 6 | 2 | | | 3 | 1 |
|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2 | 1 | | | 1 | |
| | 행정.농업.녹지.시설 | 2 | | | | | 2 |
|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행정.농업.식품위생.시설 | 2 | 1 | | | 1 | |
| | 행정.녹지.해양수산.시설 | 1 | | | | | 1 |
| | 행정.녹지.환경.시설 | 1 | | | | | 1 |
| | 행정.해양수산.녹지.시설 | 1 | | | | | 1 |
| | 행정.해양수산.식품위생.시설 | 1 | | | | | 1 |
| |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 1 | | | | | 1 |
| | 행정.환경.시설.방송통신 | 2 | | | | | 2 |
| 7 급 | 7급 소계 | 280 | 126 | 6 | 35 | 23 | 90 |
| | 행정 | 18 | 13 | 4 | | 1 | |
| | 세무 | 2 | 2 | | | | |
| | 전산 | 1 | 1 | | | | |
| | 사회복지 | 18 | 8 | | | | 10 |
| | 공업 | 4 | 2 | | | 2 | |
| | 농업 | 2 | 2 | | | | |
| | 녹지 | 1 | 1 | | | | |
| | 수의 | 1 | | | | 1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보건 | 3 | | | 3 | | |
| | 보건진료 | 5 | | | 5 | | |
| | 의료기술 | 2 | | | 2 | | |
| | 간호 | 2 | | | 2 | | |

7급

| | | | | | | |
|------------|----|---|---|---|---|----|
| 환경 | 1 | 1 | | | | |
| 시설 | 12 | 9 | | | 1 | 2 |
| 방재 안전 | 1 | 1 | | | | |
| 위생 | 1 | | | | | 1 |
| 운전 | 27 | 5 | 1 | 3 | | 18 |
| 전기운영 | 2 | 1 | | | 1 | |
| 기계운영 | 3 | 1 | | 1 | 1 | |
| 열관리운영 | 1 | | | | 1 | |
| 사무운영 | 6 | 2 | | | 1 | 3 |
| 행정.세무 | 17 | 8 | 1 | | | 8 |
| 행정.전산 | 2 | 2 | | | | |
| 행정.사회복지 | 19 | 6 | | | | 13 |
| 행정.사서 | 4 | 3 | | | | 1 |
| 행정.공업 | 3 | 3 | | | | |
| 행정.농업 | 21 | 7 | | | 1 | 13 |
| 행정.녹지 | 5 | 3 | | | | 2 |
| 행정.해양수산 | 5 | 3 | | | | 2 |
| 행정.보건 | 1 | 1 |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행정.시설 | 24 | 9 | | | 5 | 10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공업.시설 | 2 | 2 | | | | |
| 농업.수의 | 3 | | | | 3 | |
| 보건.식품위생 | 1 | 0 | | 1 | | |
| 보건.간호 | 4 | | | 4 | | |
| 행정.세무.전산 | 2 | 1 | | | | 1 |
| 행정.세무.사회복지 | 1 | | | | | 1 |
| 행정.세무.농업 | 3 | 1 | | | | 2 |
| 행정.세무.해양수산 | 3 | | | | | 3 |
| 행정.세무.환경 | 1 | 1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2 | 1 | | 1 | | |
| 행정.공업.녹지 | 1 | 1 | | | | |
| 행정.공업.환경 | 6 | 3 | | | 3 | |
| 행정.공업.시설 | 4 | 2 | | 1 | 1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1 | |
| 행정.농업.시설 | 2 | 2 | | | | |
| 행정.녹지.시설 | 4 | 4 | | | | |

| | | | |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2 | 2 | |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1 | 1 | | | | |
| | 행정.보건.간호 | 2 | 1 | | 1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11 | | | 11 | | |
| | 행정.세무.환경.시설 | 2 | 2 | | | | |
| | 행정.전산.사서.방송통신 | 1 | 1 | | | | |
| | 8급 소계 | 193 | 83 | 3 | 28 | 7 | 72 |
| 8 급 | 행정 | 14 | 13 | 1 | | | |
| | 세무 | 2 | 2 | | | | |
| | 사회복지 | 6 | 3 | | | | 3 |
| | 공업 | 1 | 1 | | | | |
| | 녹지 | 1 | 1 | | | | |
| | 해양수산 | 1 | 1 | | | | |
| | 보건 | 6 | | | 6 | | |
| | 의료기술 | 6 | | | 6 | | |
| | 간호 | 3 | | | 3 | | |
| | 보건진료 | 3 | | | 3 | | |
| | 시설 | 13 | 6 | | | 1 | 6 |
| | 방재안전 | 1 | 1 | | | | |
| | 운전 | 8 | 1 | 1 | 1 | | 5 |
| | 사무운영 | 0 | | | | | 0 |
| | 행정.세무 | 13 | 5 | | | | 8 |
| | 행정.전산 | 3 | 3 | | | | |
| | 행정.사회복지 | 16 | 6 | 1 | | | 9 |
| | 행정.농업 | 11 | 9 | | | | 2 |
| | 행정.녹지 | 1 | | | | | 1 |
| | 행정.해양수산 | 7 | 2 | | | | 5 |
| | 행정.식품위생 | 3 | 1 | | 2 | | |
| | 행정.환경 | 3 | 2 | | | 1 | |
| | 행정.시설 | 14 | 11 | | 1 | 2 |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 공업.환경 | 3 | 1 | | | 2 | |
| | 보건.식품위생 | 1 | | | 1 | | |
| | 보건.간호 | 4 | 1 | | 3 | | |
| | 행정.세무.농업 | 2 | 1 |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20 | | | | | 20 |
|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 2 | | | | | 2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2 |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행정.공업.녹지 | 3 | 1 | | | | 2 | |
| 행정.공업.환경 | 1 | 1 | | | | | |

| | | | | | | | |
|------------|---------------|----|----|---|----|---|----|
| | 행정.공업.시설 | 6 | 5 | | | | 1 |
| | 행정.농업.녹지 | 3 | | | | | 3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 6 | 0 | | 2 | 0 | 4 |
| | 9급 소계 | 90 | 37 | 1 | 8 | 3 | 41 |
| 9 급 | 행정 | 9 | 2 | 1 | | | 6 |
| | 사회복지 | 7 | 1 | | | | 6 |
| | 보건 | 2 | | | 2 | | |
| | 의료기술 | 1 | | | 1 | | |
| | 시설 | 3 | 2 | | | | 1 |
| | 방재안전 | 1 | 1 | | | | |
| | 행정.세무 | 3 | 2 | | | | 1 |
| | 행정.사회복지 | 6 | 1 | | | | 5 |
| | 행정.사서 | 2 | 2 |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 행정.농업 | 7 | 3 | | | | 4 |
| | 행정.녹지 | 4 | 3 | | | | 1 |
| | 행정.해양수산 | 9 | | | | | 9 |
| | 행정.환경 | 3 | 2 | | | | 1 |
| | 행정.시설 | 10 | 6 | | | 1 | 3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 공업.시설 | 3 | 2 | | | 1 |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3 | | | | | 3 |
| | 행정.공업.환경 | 1 | | | | 1 | |
| | 행정.공업.시설 | 2 | 2 | | | | |
| | 행정.농업.시설 | 2 | 1 | | | | 1 |
| | 행정.녹지.시설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행정.보건.시설 | 1 | 1 | |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 6 | 1 | | 5 | | | |
| 전 문 경력관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1 | | |
| | 나군 | 1 | | | 1 | | |
| 별정직 | 별정직6급상당 계 | 0 | | | | | |
| | 비서요원 | 0 | | | | | |
| 연구직 | 연구직 계 | 9 | 5 | | 2 | 2 | |
| | 학예연구사 | 7 | 5 | | | 2 | |
| | 농업연구사 | 2 | | | 2 | | |
| 지도직 | 지도직 계 | 33 | 2 | | 31 | | |
| | 농촌지도관 | 3 | | | 3 | | |
| | 농촌지도사 | 30 | 2 | | 28 | | |

(별표 1) < 개정안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 기 관 별 | | 합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 관 | 사업소 | 읍·면 |
|-------|-----------------------------|-----|-----|----|----------|-----|-----|
| 직급별 | 직렬별 | | | | | | |
| 총 계 | | 859 | 385 | 15 | 127 | 51 | 281 |
| 정무직계 | | 1 | 1 | | | | |
| 일반직계 | | 816 | 377 | 15 | 94 | 49 | 281 |
| 4 급 | 4급 소계 | 2 | 1 | | 1 | | |
| | 서기관 | 1 | 1 | | | | |
| | 기술서기관 | 1 | | | 1 | | |
| 4~5급 | 4 ~ 5급 소계 | 3 | 2 | | | | 1 |
| | 서기관.행정 | 1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시설 | 1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1 | | | | | 1 |
| 5 급 | 5급 소계 | 37 | 15 | 3 | 2 | 4 | 13 |
| | 행정 | 3 | 2 | 1 | | | |
| | 시설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 | 1 | 1 | | | | |
| | 행정.농업 | 3 | 2 | | | 1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행정.시설 | 7 | 5 | | | 2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1 | 1 | | | |
| | 행정.농업.녹지 | 1 | 1 | | | | |
| | 행정.농업.시설 | 1 | | | | 1 | |
| | 행정.환경.시설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4 | | | | | 4 |
|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 2 | | | | | 2 |
| | 행정.공업.농업.보건 | 1 | | | | | 1 |
| | 행정.공업.녹지.간호 | 1 | | | | | 1 |
|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 1 | | | | | 1 |
| |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 1 | | | | | 1 |
|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 1 | | 1 |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 행정.보건.환경.시설 | 1 | | | | | 1 |
|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 | | | | | | |
|----|------------|-----|-----|---|----|----|----|
| | 6급 소계 | 195 | 101 | 2 | 21 | 12 | 59 |
| | 행정 | 22 | 19 | | | | 3 |
| | 세무 | 2 | 2 | | | | |
| | 사회복지 | 2 | 2 | | | | |
| | 농업 | 2 | 2 | | |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보건진료 | 10 | | | 10 | | |
| | 시설 | 4 | 4 | | | | |
| | 운전 | 3 | 3 | | | | |
| | 행정.세무 | 7 | 6 | | | | 1 |
| | 행정.사회복지 | 19 | 4 | | | | 15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행정.공업 | 2 | 1 | | | 1 | |
| 6급 | 행정.농업 | 8 | 7 | | 1 | 0 | |
| | 행정.녹지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 | 2 | 2 | | | | |
| | 행정.보건 | 1 | | | 1 | | |
| | 행정.시설 | 13 | 12 | 0 | | 1 | |
| | 농업.수의 | 1 | | | | 1 | |
| | 보건.간호 | 1 | 1 | | | | |
| | 행정.세무.사회복지 | 4 | 2 | | | | 2 |
| | 행정.세무.농업 | 14 | 1 | | | | 13 |
| | 행정.세무.시설 | 2 | 2 | | | | |
| | 행정.전산.농업 | 1 | | | | | 1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사서 | 3 | 1 | 1 | | | 1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2 | 1 | | | 1 | |
| | 행정.사서.사무운영 | 1 | | | | 1 | 0 |
| | 행정.공업.농업 | 1 | | | | | 1 |
| | 행정.공업.녹지 | 1 | | | | | 1 |
| 6급 | 행정.공업.환경 | 2 | 2 | | | | |
| | 행정.공업.시설 | 2 | 1 | | | 1 | |
| | 행정.농업.전산 | 1 | 1 | | | | |
| | 행정.농업.녹지 | 6 | 3 | | | | 3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2 | 1 | | | | 1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 1 |

| | | | | | | |
|-----------------|-----|-----|---|----|----|----|
| 행정.농업.시설 | 3 | 3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3 | 1 | | 2 | | |
| 행정.보건.간호 | 1 | | | 1 | | |
| 전산.공업.방송통신 | 2 | 2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6 | | | 6 | | |
|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 0 | | 0 | | | |
| 행정.세무.공업.시설 | 2 | 1 | 1 | | | |
| 행정.전산.공업.시설 | 1 | | | | | 1 |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2 | | | | | 2 |
| 행정.공업.농업.환경 | 1 | | | | 1 | |
| 행정.공업.녹지.시설 | 4 | 2 | | | | 2 |
| 행정.공업.환경.시설 | 6 | 2 | | | 3 | 1 |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2 | 1 | | | 1 | |
| 행정.농업.녹지.시설 | 2 | | | | | 2 |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행정.농업.식품위생.시설 | 2 | 1 | | | 1 | |
| 행정.녹지.해양수산.시설 | 1 | | | | | 1 |
| 행정.녹지.환경.시설 | 1 | | | | | 1 |
| 행정.해양수산.녹지.시설 | 1 | | | | | 1 |
| 행정.해양수산.식품위생.시설 | 1 | | | | | 1 |
|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 1 | | | | | 1 |
| 행정.환경.시설.방송통신 | 2 | | | | | 2 |
| 7급 소계 | 280 | 126 | 6 | 35 | 23 | 90 |
| 행정 | 20 | 15 | 4 | | 1 | |
| 세무 | 2 | 2 | | | | |
| 전산 | 1 | 1 | | | | |
| 사회복지 | 18 | 8 | | | | 10 |
| 공업 | 4 | 2 | | | 2 | |
| 농업 | 2 | 2 | | | | |
| 녹지 | 1 | 1 | | | | |
| 수의 | 1 | | | | 1 | |
| 해양수산 | 2 | 2 | | | | |
| 보건 | 3 | | | 3 | | |
| 보건진료 | 5 | | | 5 | | |
| 의료기술 | 2 | | | 2 | | |
| 간호 | 2 | | | 2 | | |
| 환경 | 1 | 1 | | | | |

7 급

7급

| | | | | | | |
|------------|----|---|---|---|---|----|
| 시설 | 12 | 9 | | | 1 | 2 |
| 방재안전 | 1 | 1 | | | | |
| 위생 | 1 | | | | | 1 |
| 운전 | 25 | 5 | 1 | 3 | | 16 |
| 전기운영 | 2 | 1 | | | 1 | |
| 기계운영 | 2 | 0 | | 1 | 1 | |
| 열관리운영 | 1 | | | | 1 | |
| 사무운영 | 5 | 1 | | | 1 | 3 |
| 행정.세무 | 17 | 8 | 1 | | | 8 |
| 행정.전산 | 2 | 2 | | | | |
| 행정.사회복지 | 21 | 6 | | | | 15 |
| 행정.사서 | 4 | 3 | | | | 1 |
| 행정.공업 | 3 | 3 | | | | |
| 행정.농업 | 21 | 7 | | | 1 | 13 |
| 행정.녹지 | 5 | 3 | | | | 2 |
| 행정.해양수산 | 5 | 3 | | | | 2 |
| 행정.보건 | 1 | 1 |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행정.시설 | 24 | 9 | | | 5 | 10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공업.시설 | 2 | 2 | | | | |
| 농업.수의 | 3 | | | | 3 | |
| 보건.식품위생 | 1 | 0 | | 1 | | |
| 보건.간호 | 4 | | | 4 | | |
| 행정.세무.전산 | 2 | 1 | | | | 1 |
| 행정.세무.사회복지 | 1 | | | | | 1 |
| 행정.세무.농업 | 3 | 1 | | | | 2 |
| 행정.세무.해양수산 | 3 | | | | | 3 |
| 행정.세무.환경 | 1 | 1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2 | 1 | | 1 | | |
| 행정.공업.녹지 | 1 | 1 | | | | |
| 행정.공업.환경 | 6 | 3 | | | 3 | |
| 행정.공업.시설 | 4 | 2 | | 1 | 1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1 | |
| 행정.농업.시설 | 2 | 2 | | | | |
| 행정.녹지.시설 | 4 | 4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2 | 2 | | | | |

8 급

| | | | |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1 | 1 | | | | |
| 행정.보건.간호 | 2 | 1 | | 1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11 | | | 11 | | |
| 행정.세무.환경.시설 | 2 | 2 | | | | |
| 행정.전산.사서.방송통신 | 1 | 1 | | | | |
| 8급 소계 | 195 | 87 | 3 | 26 | 7 | 72 |
| 행정 | 18 | 17 | 1 | | | |
| 세무 | 2 | 2 | | | | |
| 사회복지 | 6 | 3 | | | | 3 |
| 공업 | 1 | 1 | | | | |
| 녹지 | 1 | 1 | | | | |
| 해양수산 | 1 | 1 | | | | |
| 보건 | 6 | | | 6 | | |
| 의료기술 | 6 | | | 6 | | |
| 간호 | 3 | | | 3 | | |
| 보건진료 | 3 | | | 3 | | |
| 시설 | 13 | 6 | | | 1 | 6 |
| 방재안전 | 1 | 1 | | | | |
| 운전 | 8 | 1 | 1 | 1 | | 5 |
| 사무운영 | 0 | | | | | 0 |
| 행정.세무 | 13 | 5 | | | | 8 |
| 행정.전산 | 3 | 3 | | | | |
| 행정.사회복지 | 16 | 6 | 1 | | | 9 |
| 행정.농업 | 11 | 9 | | | | 2 |
| 행정.녹지 | 1 | | | | | 1 |
| 행정.해양수산 | 7 | 2 | | | | 5 |
| 행정.식품위생 | 3 | 1 | | 2 | | |
| 행정.환경 | 3 | 2 | | | 1 | |
| 행정.시설 | 14 | 11 | | 1 | 2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공업.환경 | 3 | 1 | | | 2 | |
| 보건.식품위생 | 1 | | | 1 | | |
| 보건.간호 | 2 | 1 | | 1 | | |
| 행정.세무.농업 | 2 | 1 | | | | 1 |
| 행정.사회복지.농업 | 18 | | | | | 18 |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 2 | | | | | 2 |
|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2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행정.공업.녹지 | 3 | 1 | | | | 2 |
| 행정.공업.환경 | 1 | 1 | | | | |
| 행정.공업.시설 | 6 | 5 | | | | 1 |

| | | | | | | | |
|------------|------------------|------------|----|---|----|---|----|
| | 행정.농업.녹지 | 3 | | | | | 3 |
| | 행정.농업.환경 | 1 | | | |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 8 | | | 2 | | 6 |
| | 9급 소계 | 103 | 45 | 1 | 8 | 3 | 46 |
| 9 급 | 행정 | 15 | 8 | 1 | | | 6 |
| | 사회복지 | 9 | 1 | | | | 8 |
| | 보건 | 2 | | | 2 | | |
| | 의료기술 | 1 | | | 1 | | |
| | 시설 | 4 | 3 | | | | 1 |
| | 방재안전 | 1 | 1 | | | | |
| | 행정.세무 | 3 | 2 | | | | 1 |
| | 행정.사회복지 | 9 | 1 | | | | 8 |
| | 행정.사서 | 2 | 2 |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 행정.농업 | 7 | 3 | | | | 4 |
| | 행정.녹지 | 5 | 4 | | | | 1 |
| | 행정.해양수산 | 9 | | | | | 9 |
| | 행정.환경 | 3 | 2 | | | | 1 |
| | 행정.시설 | 10 | 6 | | | 1 | 3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 공업.시설 | 3 | 2 | | | 1 |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3 | | | | | 3 |
| | 행정.공업.환경 | 1 | | | | 1 | |
| | 행정.공업.시설 | 2 | 2 | | | | |
| | 행정.농업.시설 | 2 | 1 | | | | 1 |
| | 행정.녹지.시설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행정.보건.시설 | 1 | 1 | |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 6 | 1 | | 5 | | | |
| 전 문 경력관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1 | | |
| | 나군 | 1 | | | 1 | | |
| 별정직 | 별정직6급상당 계 | 0 | | | | | |
| | 비서요원 | 0 | | | | | |
| 연구직 | 연구직 계 | 9 | 5 | | 2 | 2 | |
| | 학예연구사 | 7 | 5 | | | 2 | |
| | 농업연구사 | 2 | | | 2 | | |
| 지도직 | 지도직 계 | 33 | 2 | | 31 | | |
| | 농촌지도관 | 3 | | | 3 | | |
| | 농촌지도사 | 30 | 2 | | 28 | | |